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투자유치안내

상공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이 70년도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74개의 입주업체를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유휴지(공장 및 대지)가 있어 이곳에 입주요건을 갖춘 투자자를 유치하여 지역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심있는 국내외 업체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소개 및 투자 안내〉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0년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자유지역으로서 총면적은 803,235㎡이며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와 현재 74개의 성업중인 입주기업체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내에 운수, 해운, 하역, 보험, 통관 등의 지원기업체와 시설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 노동부사무소, 우체국 등의 행정기관이 주재하여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소위 이 지역의 가장 독특한 이점인 “현지종결제제”이다. 그리고 입주기업체에 여러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숙련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고, 특히 정부가 건설, 임대하고 있는 표준공장은 그 임대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만 갖추면 즉시 생산 가능할 수 있다.

수출자유지역은 세계의 많은 자유지역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며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전망밝은 제일가는 공업지역이다.

다 음

1. 입주우선업종

- 가. 전자 및 전기업종
- 나. 정밀기기업종
- 다. 기계 및 기기업종
- 라. 그외업종

2. 입주요건

당지역내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가공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한가지 요건을 구비한 자

- 가.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할 기업체
- 나. 한국인과 합작투자할 기업체
- 다. 현재 수출업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는 국내의 기업체로서 직접 당지역내에 이전 또는 신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3. 입주할 수 있는 공장 및 대지

위 치	대지면적	공장면적	비 고
G-1	6,783.5 ^{m²}	4,935.6 ^{m²}	(株)協進所有 ○성업공사에서 공매중에 있음.
G-2	1,699.2 ^{m²}	2,165.3 ^{m²}	○외환은행 담보
G-3	4,235 ^{m²}	4,202 ^{m²}	삼양광학공업(주) 소유 ○양도계획중
G-4	7,263 ^{m²}	6,338 ^{m²}	
S-1	-	1,190.15 ^{m²}	
S-2	-	595 ^{m²}	

※ 대지는 국유지이며 임대하고 있음.
S-1, S-2는 정부가 건설한 표준공장으로, 임대하고 있음.

4. 문 의 처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TEL : 0551-94-2773)

전자·전기제품의 국산개발 소요부품 및 견본품과 유지·보수용 부품품에 대한 수입추천 요청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00호

상공부 공고 제89-6호(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공고) 총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이하 “본회”라 한다) 장이 추천토록 된 전자·전기제품의 국산개발 소요부품 및 견본품과 유지·보수용 부품품에 대한 수입추천(이하 “수입추천”이라 한다) 요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9년 4월 1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공지사항

여부

- (5) 신청업체와 부품업체간에 국산화에 관한 이견이 있을시 의견조정
- (6) 신청수량의 적정성
- (7) 기타 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본회 회장은 신청업체의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서류작성의 정확성 검토, 자료조사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지원을 한다.

제 7 조 (수입추천수량 및 유효기간)

- 1. 수입추천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이내로 한다.
- 2. 수입추천 유효기간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 추천시에는 국산화계획년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제 8 조 (추천내용의 일부변경)

기 추천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어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 또는 부품수입추천서 일부를 변경추천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추천할 수 있다.

- (1) 일부부품의 규격 또는 가격변동
- (2) 일부부품의 삭제 또는 추가
- (3) 유효기간 이내에 추천받은 물량을 추가코자 할 때

제 9 조 (처리기간)

수입추천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 이때 공휴일과 신청자의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국산화계획확인 추천서류)

이 요령에 의해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를 확인하여 수입추천할 때에는 확인된 부품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 1부와 부품수입추천서 1부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11조 (수수료)

- 1.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산화계획확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수수료 요율은 상공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국산화촉진사업)

본회 회장은 이 요령에 의한 신청자의 부품국산화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공동개발, 신개발 및 수입부품 전시회, 부품총람 발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제재)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수입추천서상에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 (기타)

- 1.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업체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2.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견본품 수입추천 요령>

- 1. 추천대상품목 :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중 전자·전기제품
- 2. 추천대상자 : 전자·전기 제조업체
- 3. 추천기준 : 국내제조를 위한 개발용으로써 필요한 최소량의 견본품
- 4.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5. 구비서류
 - 가. 수입승인 신청서 : 5부
 - 나. 물품매도 계약서 사본 : 1부
 - 다. 카달로그 및 용도설명서 : 1부
 - 라. 국산개발 세부계획서 : 1부
 - 마. 신청량의 적정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 1부

공지사항

바.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 제조업체 증빙서류 :

1부

6. 수입추천 수수료 :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추천 받은 자는 소정의 수입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사용실적 보고 :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추천 받은 자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개발종료시와 개발중인 경우 연 1회 (1.31까지) 사용실적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후관리 : 현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 확인할 수 있다.
9. 기 타 :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유지·보수용 부분품에 대한 수입추천 요령〉

1. 추천대상품목

가.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중 전자제품의 유지·보수용 부분품

2. 추천대상자

상기 1의 가, 나항의 실수요자(실사용자 또는 제조업자)

3. 추천기준

유지·보수용 부분품이 국내수요에 비추어 경제성이 없어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품질, 규격, 특성 등이 국산대체 또는 수입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

4.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5. 구비서류

- 가. 수입승인 신청서 : 5부
- 나.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 1부
- 다. 카달로그 또는 용도설명서 : 1부
- 라. 1의 가항(수입면장 등), 나항(부품수입추천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부
- 마.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수입 불가피 사유서

: 1부

바. 신청량의 적정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 1부

6. 수입추천 수수료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추천 받은 자는 소정의 수입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기 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추천된 것은 이 공고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본회 공고 제94호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산개발대상품목

HS	품 명
8471	○컴퓨터, 단말기(키 입력장치, 광학식 인식장치, 음극선관 단말기, 도형장치 등), 보조기억장치(FDD, HDD, MTU스트리머), 프린터
8476	○자동판매기
8517	○전자식교환기, 반송장치, 모사전송기, 기타의 유선통신기기
8525	○방송용기기, 무선전화기, 녹화용카메라, M/W장비,
8526	
8527	
8528	기타의 무선기기(PAGER, 무선원격조정기 등)
8537	○컨트롤러(NC, CNC, ROBOT 등)
9018	○전기식 의료기기
9022	○X선 또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전기식의료기기, 화물검색기
9031	○어군탐지기
8521	○VTR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추천 요령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0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5 - 2 - 3 조 제 3 항의 규정

공지사항

에 의거 본 회의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부 칙

1989년 4월 4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1. 목 적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추천 요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전자공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대상품목

H S	추천대상품목	비 고
3818-00-1000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웨이퍼	•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 추천범위 및 기준
가. 포괄추천
당해품목의 내수용 수입의 승인에 있어 사전에 추천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승인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추천제한
무역의 지역별 균형적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처리 및 유효기간
가. 처리기간
(1)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 8 근무시간내
(2) 심의회를 요하는 경우 : 6일 이내

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5. 구비서류
(1)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신청서 5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카달로그 1부

6. 기 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 요령은 198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추천된 것은 이 공고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본회 공고 제92호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89년도 특별외화대출 자금지원 안내

본회에서는 상공부 공고 제89-2호 및 본회 공고 제99호('89. 1. 26)에 의거, '89년도 특별외화대출 추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지원금액중 대기업 해당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액융자 추천되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동 자금의 활발한 이용을 통하여 중소 전자전기제조업체의 산업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는 업체는 동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3월 25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1. 지원대상
○주요시설재 수입자금(일본지역 수입도 5억불 범위내에서 가능)
○해외투자자금(1억불 범위)
2. 지원규모
3. 지원조건
가. 금리 : LIBOR(런던은행간 금리)+1.0% : 8~9% 수준

구 분	'89년도	상 반 기
계	50억불	30억불
대 기 업	30억불	20억불
중 소 기 업	20억불	10억불

*외화기준 대출자금으로 원화평가절상을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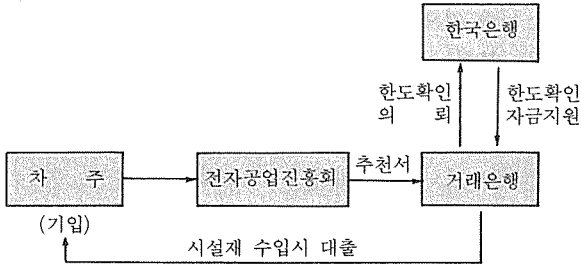
공지사항

할 때 이자 부담은 거의 없음.

나. 기간 : 10년 이내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4. 지원방법



5. 문의처

○분회 수입과 : 553-0941~7

○상공부 중소기업정책과 : 503-9459,
산업정책과 : 503-9452

6. 관련규정 : 상공부 공고 제89-2호 “89년도 특별외화대출 추천요령 공고”, 분회 공고 제99호

7. 특별외화대출 자금의 유리한 점

가. 수입선에 대한 제한없음 : 대일수입에 대해서도 상반기 5억불 범위내에서 지원

나. 이자 부담이 거의 없음.

○외형 금리는 8~9%이나

○국제수지 흑자에 따라 원화가 평가절상될 것을 고려하면 대출금 상환시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됨.

다. 용자조건 유리

○기간 : 10년 이내

○용자비율 : 100% 이내

라. 은행의 용자취급 선호 : 대출 재원을 한국은행에서 지원

마. 담보시 유리 : 시설자금으로 후취담보 설정 가능

부품 품질 인증 현황

한국전기통신공사 품질보증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품품질 인증 업무중 현재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TDx-1 및 1A 부품 중 한국전자통신 연구소로부터 초기인정부품으로 지정받아 TDx 생산업체에 공급되고 있는 부품중 동 품질 보증단에서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부품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유효기간	부품명	부품번호	인증범위	규격번호 및 재개정일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주소
						공통	개별	시험		
88-69	88. 8. 21	90. 8. 20 까지	저항기 Network (ETRI-C)	DUG 0000005		1301-RES (86. 3. 22)	저항기 Network Ⅲ (86. 3. 22)	TE/Q-002 (86. 2. 12)	대우전자 부품(주)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정리 543
88-70	88. 8. 21	90. 8. 20 까지	인쇄회로기판	DBA 000 DBB 000	단면 양면	1301-PCB (86. 4. 25)	-	TE/Q-011 (86. 5. 9)	우진전자 (주)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5
88-71	"	"	"	DBC 000 DBD 000	4층 6층	"	-	TE/Q-012 (86. 5. 9)	"	"
88-72	88. 8. 26	90. 8. 25 까지	PCB Edge Connector	DPA 002001	-	1301-CON (86. 3. 28)	-	C-031 (85. 3. 28)	(주)우영	경기도 서탄면 수월암리 220-1
88-78	88. 9. 16	90. 9. 15 까지	인쇄회로기판	DBA000 DBB000	단면 양면	1301-PCB (86. 4. 25)	-	TE/Q-011 (85. 5. 9)	(주)대방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모산리 58-1

공지사항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유효기간	부 품 명	부 품 번 호		인 증 범 위	규격번호 및 제개정일			제조업체명
				공 사	제조업체		공 통	개 별	시 험	
88-79	88. 9. 24	90. 9. 23 까지	MOS IC	DUD 102 0002	Z8430 ADS	-	1301-Z80 (86. 4. 24)	DMA (86. 4. 24)	C-014 (85. 7. 15)	ZILOG
88-80	"	"	"	DUD 102 0004	Z8430 ADS	-	"	CTC (86. 4. 24)	"	"
88-81	"	"	"	DUD 102 0005	Z8440 ADS	-	"	S10/0, 2 (86. 4. 24)	"	"
88-82	"	"	"	DUD 102 0006	Z8442 ADS	-	"	"	"	"
88-83	88. 9. 27	90. 9. 26 까지	인쇄회로기판	DBA 000 DBB 000	- -	단 변 양 면	1301-PGB (86. 4. 25)	-	TE/Q-011 (85. 5. 9)	(주) 새한전자
88-84	88. 9. 27	90. 9. 26 까지	인쇄회로기판	DBC 000 DBD 000	- -	4 층 6 층	1301-PCB (86. 4. 25)	-	TE/Q-012 (85. 5. 9)	"
88-85	88. 9. 1	90. 8. 31 까지	PTC저항	DRZ 001 0001	PSR-2 1104A	-	1301-PTC (87. 1. 15)	-	1301-PTC (87. 1. 15)	Raychem Co.
88-86	88. 11. 5	90. 11. 4 까지	국부전원 공급장치	COF 10168	HPK-101	-	-	1301-CS CSPB (87. 9. 1)	국부전원 공급장치 시험규격서 (86. 4. 25)	화 승 전 자(주) (구 : 한원전자(주))
88-87	"	"	"	COF 10169	HPK-102	-	-	1301-CSP B-A (87. 9. 1)	"	"
88-88	"	"	"	COF 10170	HPK-103	-	-	1301- CCPB (87. 9. 1)	"	"
88-89	"	"	"	COF 10172	HPK-104	-	-	(87. 9. 1) 1301- CMPB	"	"
88-90	88. 11. 5	90. 11. 4 까지	국부전원 공급장치	COF 10174	HPK-106	-	-	1301- CNPB (87. 9. 1)	국부전원 공급장치 시험규격서 (86. 4. 25)	화 승 전 자(주) (구 한원전자 (주))
88-91	88. 11. 5	90. 11. 4 까지	국부전원 공급장치	COF 10196	HPK- 201	-	-	1301- SSPB (87. 9. 1)	"	"

공지사항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유효 기 간	부 품 명	부 품 번 호		인 증 범 위	규격번호 및 재개정일			제 조 업 체 명
				공 사	제조업체		공 통	개 별	시 험	
88-92	"	"	"	COF 10202	HPK- 204	-	-	1301- SNPB (87.9.1)	"	"
88-93	88.11.26	90.11.25 까지	"	COF 10168	PSA 104N	-	-	1301- CSPB (87.9.1)	국부전원공 급장치시험 규격서 (86.4.25)	(주) 동아전기
88-94	"	"	"	COF 10169	PSA 104A	-	-	1301- CSPB-A (87.9.1)	"	"
88-95	"	"	"	COF 10170	PSA 105N	-	-	1301- CCPB (87.9.1)	"	"
88-96	"	"	"	COF 10172	PSA 106N	-	-	1301- CMPB (87.9.1)	"	"
88-97	"	"	"	COF 10174	PSA 108N	-	-	1301- CNPB (87.9.1)	"	"
88-98	"	"	"	COF 10196	DPK 101	-	-	1301- SSPB (87.9.1)	"	"
88-99	"	"	"	COF 10197	DPK 102	-	-	1301- SCPB (87.9.1)	"	"
88-100	"	"	"	COF 10198	DPK 103	-	-	1301- SCPB-A (87.9.1)	"	"
88-101	"	"	"	COF 10202	DPK 104	-	-	1301- SNPB (87.9.1)	"	"

인증번호	인증일자	부 품 명	부 품 번 호		인증범위	부품규격서번호	제조업체명	주 소
			공 사	제조업체				
88-105	88.12.10	가입자선로 계측장치 (DTMS)	ZFD 11503	922E	-	1301-DTMS	우진전자통신 (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2-4
88-106	88.12.26	구부전원 공급장치	COF 10196	DPK 101	-	1301-SRPB	이화전기공업 (주)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20
88-107	"	"	COF 10197	DPK 102	-	1301-SCPB	"	"

공지사항

인증번호	인증일자	부 품 명	부 품 번 호		인증범위	부품규격서 번호	제조업체명	주 소
			공 사	제조업체				
88-108	"	"	COF 10202	DPK 104	-	1301-SNPB	"	"
88-109	88. 12. 30	PCM필터	DUC 6000015	KT 3040	-	1301-MOS PCM Filter	삼 성 전 자(주)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82-3
88-110	88. 11. 25	푸쉬-버튼 스위치	DSA 0000011	AB-15AH	-	1301-SWI 푸쉬-버튼과 마이크로스위치 규격	(주)보 성 화 립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696-1
88-111	"	DIP스위치	DSC 0000005	BSD 102-S	-	1301-SWI DIP 스위치 규격	"	"
88-112	"	"	DSC 0000006	BSD 104-S	-	"	"	"
88-113	"	"	DSC 0000007	BSD-108	-	"	"	"
88-114	"	토글스위치	DSD 0000003	M-2023- LLW01	-	1301-SWI 토글스위치 규격	"	"
88-115	88. 12. 30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	DCA000	SM- series	Minia- ture. Block Type. 20%	1301-CAP (87. 12. 2)	삼 영 전 자 공 업(주)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2640-1
88-116	89. 2. 9	PCB Edge Connector	DPB 0020001	OPC-17- 100P	100P	1301-CON (PCB Edge Connector규격	동 양 정 밀 공 업(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146-1
89-001	89. 1. 16	Hybrid Clock Crystal Oscillator	DYB 0000002	KCT 250C	16.0000 MHz	1301-ECO	고 니 정 밀(주)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604
89-002	89. 1. 16	"	DYB 0000003	"	19.6608 MHz	"	"	"
89-003	89. 2. 16	TTL IC	DUA 1120241	SN74LS 241J	-	1301-TTL 74LS241	모 토 로 라 코 리 아(주)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445
89-004	89. 3. 2	미니어처 릴레이	DKC 0000002	DS 2E- M-DC 5V (AG-20 2944)	2 T	1301-REL (Miniature Relay. 수은 Relay 규격) 2 T Miniature Relay1	마 쓰 시 다 전 공(주)	Tamiyaji, Tamaki, Watarai-gun, Mie 519-04, Japan
89-005	89. 3. 11	금속화 폴리에스터 필름 커패 시터	DCF 000	TM Series	Epoxy type, ±10%	1301-CAP (금속화 필름 콘덴서 규격)	삼 화 전 기(주)	충청북도 청주시 북대동 92

함)

(다) 동일인당 한도: 3억원 이내 (산업기술 연구조합을 통한 공동연구인 경우 5억원 이내, 차세대기억소자개발 사업은 제한없음)

(라) 용자비율:

- 중소기업: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견기업: 소요자금의 70% 이내

(마) 자금의 지원범위

- 1)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및 위탁연구 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 견본비 및 재료비
 - 시험검사비
 - 연구인력 교육 연수비
 - 기술지도비
 - 위탁연구개발비
- 2) 연구개발용 기구·기자재 구입비
- 3) 기술도입비
- 4) 외국기술인증 획득비
- 5) 시험생산시설 (Pilot Plant)의 건설 및 운전비

(2) 합리화사업

(가) 용자금리: 연 7%

(나) 용자기간: 8년 이내 (3년 거치기간 포함)

(다) 동일인당 한도: 3억원 이내

(라) 용자비율:

- 중소기업: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견기업: 소요자금의 70% 이내

(마) 자금의 지원범위

- 합리화 자금에 의한 개체시설의 종류와 폐기시설 및 개체시설의 비율은 상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용자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4. 용자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보

가. 취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운용 및 사후관리 시행세칙에 의거 공업발전기금 운용 심의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또는 선정지침)을 작성, 동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용자대상사업자(차순위 사업자 포함)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상공부장관은 각 취급기관에서 선정된 용자대상사업자를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여 용자 취급은행장에게 통보한다.

다. 상공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용자대상사업자의 용자대상사업 및 용자금액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취급기관이 용자취급은행장에게 통보한다.

5. 사후관리

가. 취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운용 및 사후관리 시행세칙에 의거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 및 용자취급은행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나. 기금을 용자받은 자는 본 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을 취급기관(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공부장관은 용자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가 기금대출을 포기하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확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라. 용자취급은행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자는 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금융기관 시설자금 최고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당초 대출일로부터 자금회수당일까지 징수하며,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수료 징수

각 취급기관은 공업발전기금의 운용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자대상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지사항

부 칙 다 음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상공부고시 88-49호 ('88. 11. 18)는 폐지한다.
3. 이 고시에서 정한 용자금리는 '89년도에 선정된 용자대상사업자에 대하여부터 적용되며 '88년말 이전에 선정된 용자대상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금리를 적용한다.

가. 시찰개요

- 지 역 : 北京, 天津, 上海, 廣州 등의 經濟開放地域
- 기 간 : 1989년 6월 11일(日)~6월 21일(水)
- 규 모 : 15개 업체
- 참가대상 : 電子, 通信, 素材, 情報産業 및 電子關聯産業

나. 참가비용 : 235만원

다. 신청기한 : 1989년 5월 15일(月)

라 : 기획주관

中國-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CITIC)

韓國-海外交流컨설팅 Group

마. 후 원 : 中國對外經濟貿易諮問公司
(CONSULTEC)

바. 문 의 처 : 海外交流컨설팅 Group
(TEL : 733-4368)

中國 情報·通信産業 교역 및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안내

「海外交流 컨설팅 Group」에서는 오는 6월, 「中國國際郵便·通信機器展 및 國際計測制御機器展」 참관과 교역 및 투자환경 조사를 위한 시장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설탕은 안전한 건강식품

과일이나 채소가 안전한 건강식품이라면 천연의 농산물인 설탕 역시 안전한 건강식품이다.

1976년도에 미국 FDA는 “설탕과 같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식품”들에 대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연간 1인당 설탕 섭취량이 한국인 보다 4~5배 이상 높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수많은 연구단체와 의학자들을 동원하여 설탕이 인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상세히 연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현재 미국인이 섭취하고 있는 설탕의 양(연간 1인당 40kg) 과 섭취방법이 인체에 해롭다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최근(1986. 10. 20) 영국의 유력지인 타임즈와 데일리 메일지에 의할것 같으면,

영국의 보건사회성과 농업성의 요청에 의해 미FDA가 제출한 설탕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는 “설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체에 전혀 해로운 식품이 아니다.” 라고 결론 지었으며, FDA의 수석 연구관인 알란 포베스 박사는 전세계에서 행한 1000여편의 연구결과 FDA가 구성한 의학연구팀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재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기자회견(1986. 10. 19)에서 밝혔다.

“설탕이 비만, 당뇨, 고혈압 및 심장병 등과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같이 설탕이 안전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은 FDA와 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기관들에서 분명하게 밝힌 확고부동한 결론인 것이다.